

경기도 고시 제2017-1121호

경기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고시 폐지

경기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43호, 2015.07.31.)를 폐지한다.

2017. 11. 24.

부칙

경 기 도 지 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시 제2017-5264호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진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1. 24.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변경없음)

- 관리기관 :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일원

나. 조성목적 : 생 략(변경없음)

-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및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기, 전자등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

다. 사업추진경위(변경없음)

- 2004. 9.30 : 평택진위지방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4-265호)
- 2005. 7.04 : 평택진위지방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5-206호)
- 2006. 9.18 : 평택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306호)
- 2006. 9.25 : 평택진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319호)
- 2007.12.10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440호)
- 2009. 1.02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562호)
- 2010. 6.01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177호)
- 2011. 1.12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9호)
- 2011. 1.12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1-30호)
- 2011. 4.04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79호)
- 2016. 4.01 : 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072호)
- 2017. 1.16 : 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5012호)

라. 분양계획(변경없음)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양 가능면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계	분양	미분양			
				조성	조성중		
계	293,956.6	293,956.6	279,936.6	14,020	-	2003~ 2011.1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산업시설	259,902.2	259,902.2	257,918.2	1,984	-		
지원시설	34,054.4	34,054.4	22,018.4	12,036	-		

마. 입주현황(변경있음)

(기정)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m ²)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22	22		259,902.2	259,902.2	
2016. 11월 현재	21	21		257,918.2	257,918.2	
향 후 계 획	1	1		1,984	1,984	

경 기 도 보

제5853호

2017.11.24.(금)

(변경)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22	22		259,902.2	259,902.2	
2017. 10월 현재	22	22		259,902.2	259,902.2	

바. 입지여건(변경없음)

시 설 명	총 계 획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 로(㎡)	69,592.8	2003~2011.01	평택시·평택도시공사
용 수(㎡/일)	2,282	2003~2011.01	진위통합배수지 공급
전력(MWh/년)	15,024	2003~2011.01	사업지구내 신설 변전소에서 공급
통신(대)	550	2003~2011.01	한국통신공사(KT)
에너지(LNG)	4,076toe/년	2003~2011.014	(주)삼천리도시기스
오·폐수처리장(㎡/일)	1,503	2003~2011.01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는 분류식으로 처리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후 방류
폐기물처리장(kg/일)	69.26ton/일	2003~2011.01	폐기물처리장(위탁)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 중소기업 육성단지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없음)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485,964.1(100)	259,902.2(53.5)	34,054.4(7.0)	88,852.0(18.3)	103,155.5(21.2)

【붙임 #2】 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도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있음)

가) 산업시설구역(당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이라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가)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유치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 효율적인 업종별 배치

나)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업종별 집단화를 유도

다) 입주기업의 입주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달리 배치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3】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 업종별배치계획도

라. 입주관리계획(변경있음)

기 정

1)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제조업(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다만, 【붙임 #1】의 입주제한업종 및 환경관련법률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은입주를 제한함.(단, 전량위탁처리업체 또는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특례지역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폐수배출로 인하여 다른 기업체의 조업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입주 결정. 대기,악취,위험물 등 또한 같다)

* 2015.12.31일 이전 입주계약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는 그 업종을 영위할수 있으나 이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양수,경매.기타 법률에 의해 취득하여 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등록)불가.

변 경

1)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제조업 (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및 「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
- 다만, 【붙임 #1】의 입주제한업종 및 환경관련법률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함.(단,전량위탁처리업체 또는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특례지역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폐수배출로 인하여 다른 기업체의 조업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입주 결정. 대기, 악취, 위험물 등 또한 같다)
- * 2015.12.31일 이전 입주계약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는 그 업종을 영위할수 있으나 이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양수,경매,기타 법률에 의해 취득하여 그 업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입주(등록)불가.

2) 입주자격(변경)

가) 산업시설구역(당초)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본 공장을 이전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한 공장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본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한 공장
- 「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및 「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신도시 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 중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200㎡ 이상의 공장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
- 2순위 : 이전적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지정)업자에게 매각하고 이전하는 업체
- 3순위 : 평택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 4순위 : 자가공장으로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업체(무등록 공장 포함)
- 5순위 : 기존공장을(임차공장포함) 폐쇄하고 이전하는 무등록 공장
- 6순위 : 수출기업의 분공장(3년간 평균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공장)
- 7순위 : 1순위 내지 6순위 이외의 공장

※ 일반단지 입주우선순위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시키되 동일순위 경합시에는 추첨하여 선정

4)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5) 산업용지 분할면적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경 기 도 보

제5853호

2017.11.24.(금)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1) 산업용지 관리
 -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진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종류 및 발생량 등을 검토하여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적합한 방지지설을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산단내 발생 폐수는 진위폐수종말처리장기본계획서 승인내역에 따라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유입하여야 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근로자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때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집적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고 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 4)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제체제 구축
-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없음)
 - 1) 공장설립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지원시설 설치계획
 - 우선입주 및 배치기준
 - 기업체 유치 및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가능 제조업체 및 지원기관을 우선적으로 입주유치
 -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소요 면적을 고려하여 배치
 - 입주기업체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우선 유치
 - 지원시설별 설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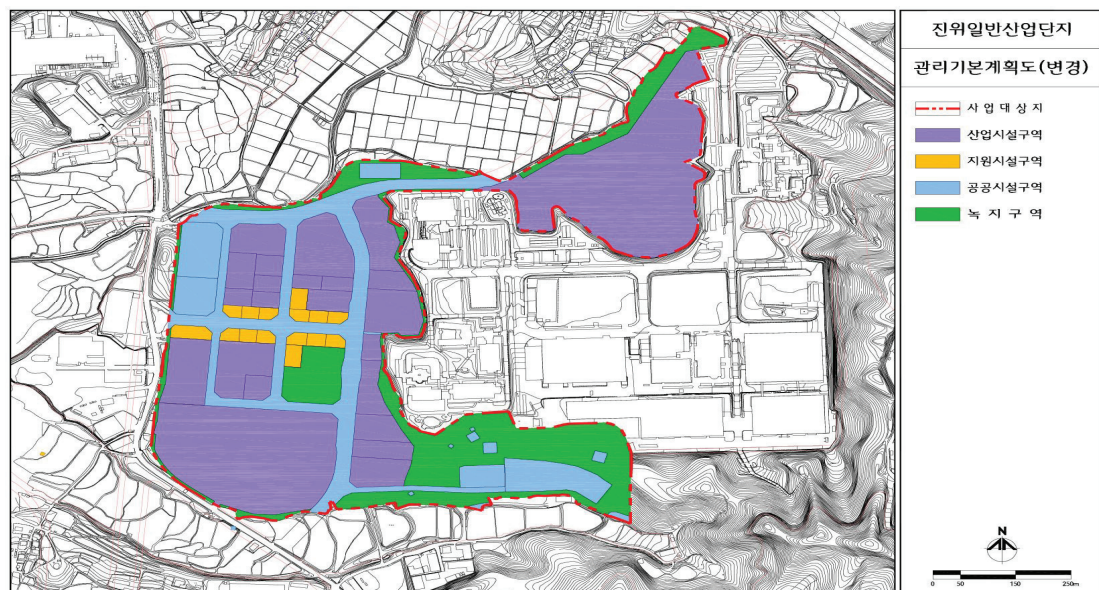
구 분		전체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25	34,054.4
지원시설용도	주차장	2	3,000.2
	폐기물처리시설	1	12,036.0
	변전소	1	4,072.0
	고압철탑	6	1,662.0
	지원시설	15	13,284.2

- 사.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 집적법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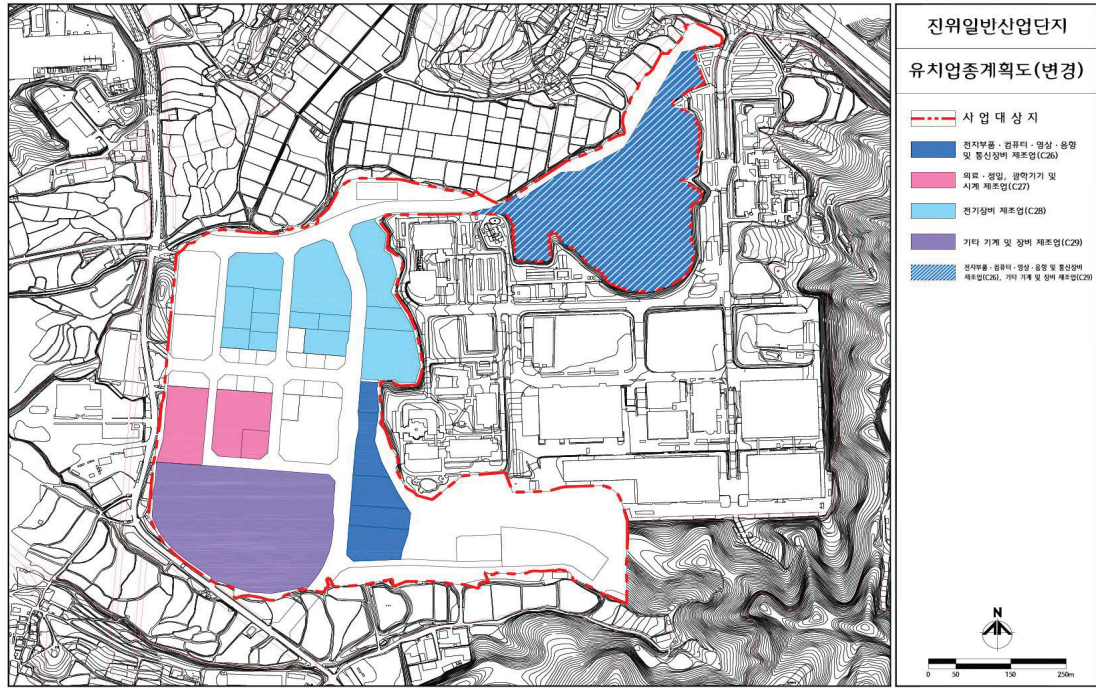
【붙임 #1】입주제한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0110	도축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0612	곡물 제분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13401	숨 및 실 염색가공업	23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23911	건설용석제품제조업(성형가공품)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	23991	아스콘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3999	그 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아스팔트성형제품제조)
17110	펄프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팔기용원지제조업	23919	기타석제품제조업 (건설용 이외 착색골재 생산)
17123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24111	제철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4112	제강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석탄가공품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19210	원유정제처리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0131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0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5922	도금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우라늄광 및 토륨광농축)		

【붙임 #2】진위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도



【붙임 #3】진위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붙임 #4】진위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